# 전자금융 외화환전거래 약관

### 제 1조 (목적)

이 약관은 주식회사 부산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에 고객이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 여 외국통화의 환전거래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## 제 2 조 (대상 고객)

은행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한 국민인 거주자로 합니다.

### 제 3조 (이용 신청)

고객은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제 2 조 제 1 항 제 5 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외화 환전거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## 제 4조 (신청 및 거래 체결)

- ① 환전신청 가능금액 및 환전신청 가능통화(여행자수표 포함)는 은행이 따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
- ② 고객은 환전거래 신청 시 외화 실물 인수예정일 및 인수영업점을 지정하셔야합니다.
- ③ 고객은 환전거래 신청 시 제 3 자를 외화 실물 인수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- ④ 고객이 환전신청을 완료하면 제 5 조에서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<u>신청 시</u>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대체 인출 처리하며 그 결과를 조회하셔야 합니다.

## 제 5조 (환율 적용)

고객이 환전신청 시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이 고시한 신청시점의 대고객 '현찰매도율' 또는 '여행자수표매도율'에 은행이 정하는 신청금액별, 통화별 우대율을 감안하여 적용합니다.

# 제 6 조 (신청내용 변경 또는 취소)

고객이 환전거래를 완료한 후에는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.

# 제 7조 (외화 실물수령)

- ① 고객은 환전신청 완료 후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를 고객이 지정한 은행의 실물인수영업 점에 제시하여 외화 실물을 수령하며, 대리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외화실물을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수령이 가능합니다.
- ② 고객이 환전신청 완료 후 <u>실물인수 예정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 수령하지 않을 경우 8 영업일에 입금시점의 대고객 현찰매입율을 적용하여 출금계좌로</u> 자동입금 처리합니다.

제8조 (준용규정)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「외환 거래 기본약관」,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,「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」에 따르기로 합니다.